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제정	1998.	1.	16.	조례	제1563호
개정	1999.	9.	8.	조례	제1651호
개정	2000.	11.	3.	조례	제1712호
개정	2001.	6.	11.	조례	제1737호
개정	2001.	7.	16.	조례	제1741호
개정	2002.	11.	11.	조례	제1799호
개정	2003.	7.	9.	조례	제1824호
일부개정	2005.	6.	8.	조례	제1941호
일부개정	2005.	11.	16.	조례	제1971호
일부개정	2006.	4.	12.	조례	제1993호
일부개정	2007.	1.	4.	조례	제2040호
일부개정	2007.	3.	29.	조례	제2047호
일부개정	2008.	2.	19.	조례	제2079호
일부개정	2008.	6.	18.	조례	제2100호
일부개정	2009.	11.	12.	조례	제2232호
일부개정	2010.	5.	14.	조례	제2256호
일부개정	2011.	1.	10.	조례	제2300호
전부개정	2011.	11.	2.	조례	제2363호
일부개정	2014.	11.	14.	조례	제2576호
일부개정	2016.	2.	18.	조례	제2715호
일부개정	2017.	1.	5.	조례	제2790호
일부개정	2017.	4.	6.	조례	제2815호
일부개정	2019.	3.	5.	조례	제3037호(안양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2019.	7.	1.	조례	제3083호
일부개정	2020.	10.	15.	조례	제3250호
일부개정	2021.	11.	11.	조례	제3360호
일부개정	2021.	12.	30.	조례	제3385호
일부개정	2022.	3.	2.	조례	제3403호
일부개정	2023.	12.	29.	조례	제3602호
일부개정	2024.	7.	10.	조례	제3652호
일부개정	2024.	12.	31.	조례	제3715호
일부개정	2025.	10.	13.	조례	제3805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양시 체육시설의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1. 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1. 14., 2017. 1. 5., 2019. 7. 1., 2020. 10. 15., 2023. 12. 29.>

1. “체육시설”이란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건립한 모든 체육시설을 말하며, “부속시설”이란 그에 부속된 설비를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의 체육시설을 사용하거나 방송, 광고게시, 공연, 전람 등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3. “사용자”란 체육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정기간 이용하는 사람을, “사용

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관람권 수입에 따른 사용료 포함)을 말한다.

4. “관람권”이란 체육경기대회 및 그 밖의 행사를 통하여 관람수입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이용권을 말한다.
5. 삭제 <2023. 12. 29.>
6. “어린이”란 5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7.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8. “군인”이란 하사 이하의 군인(의무경찰 포함)을 말한다.
9. “성인”이란 19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10. “단체”란 동일목적으로 30명 이상이고 인솔자에 따라 동시에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11. “체육행사”란 공인체육경기, 사회 공익을 위한 체육경기 및 국제경기과 체육관련 활동을 말한다.
12. “체육외 행사”란 제11호의 체육행사 이외의 문화행사 등 모든 행사를 말한다.
13. “전용사용자”란 경기장 전체를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사람을, “전용사용료”란 전용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시설의 개방) ① 체육시설은 시민건강 증진을 위하여 연중 개방한다. 다만, 수영장은 매월 2회 정기 점검을 위하여 개방하지 아니한다.

②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은 각 시설별로 상설스포츠 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연간, 월간, 주간별로 주민이용 계획을 수립하여 매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4. 11. 14.>

1. 개방시설별 이용기간 및 시간, 이용수칙
2. 상설스포츠 교실의 종류 및 이용방법
3. 시설 종류별 사용료, 무료시설의 범위 및 이용방법

③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기구와 제2항의 각 호에 규정된 내용을 주민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소관 체육시설의 활용상태를 매 분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대주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개방제한)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체육시설의 개방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개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4.>

1. 시설의 개보수
2. 시설의 이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3. 그 밖에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사용허가)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전에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연습 또는 체력단련을 위하여 개인이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료를 납부하고 연습사용권을 교부받음으로써 허가에 갈음한다. <개정 2014. 11. 14., 2020. 10. 15.>

② 시장은 지역주민 누구나 체육시설 사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사용기간 등 구체적인 허가기준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신설 2020. 10. 15.>

제6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2명 이상 경합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개정 2014. 11. 14., 2020. 10. 15., 2022. 3. 2., 2024. 12. 31.>

1. 국가·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또는 시의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체육 행사
5. 경기연습(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연습 및 시합 포함 단, 인근 지역주민 생활체육 활동을 우선적으로 배려할 수 있다),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6. 그 밖에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람, 전시행사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 같은 호 내에서 경합할 경우 안양시민을 우선한다. <신설 2024. 12. 31.>

제6조의2(장애인에 대한 사용허가 우선순위 특례) 시장은 안양시장애인체육회(가맹단체를 포함한다)에서 대회출전 준비 등을 위하여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체육시설의 일부를 우선 이용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 4. 6.]

제7조(사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입장 제한 및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4.,

2023. 12. 29.>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된 때
3. 상행위 등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8조(사용시간) ① 체육시설의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체육시설을 위탁하여 운영·관리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시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16. 2. 18.>

구 분	사 용 시 간	
하 절 기 (3월~10월)	주 간	오전 5시 ~ 오후 6시까지
	야 간	오후 6시 ~ 오후 12시까지
동 절 기 (11월~2월)	주 간	오전 6시 ~ 오후 5시까지
	야 간	오후 5시 ~ 오후 12시까지

② 체육시설의 사용료 산정을 위한 사용시간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4. 11. 14., 2016. 2. 18.>

1.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나 행사 등이 종료되었거나 사용을 중지한 경우에는 사용시간의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 부득이한 사유로 경기나 행사 등이 차례로 미루어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사용시간은 경기나 행사의 관련 시설물 등의 설치를 시작한 때부터 그 시설물 등의 철거를 완료한 때까지 산정한다. 이 경우 경기나 행사 없이 존치되어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주간사용시간으로 산정한다.

[제목개정 2016. 2. 18.]

제9조(사용료) ①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1부터 별표 5까지의 규정과 같다.

② 사용료는 사용허가 신청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부속시설 사용료는 행사종료 7일 이내에 정산하여 납부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부속시설사용료를 납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제목개정 2017. 1. 5.]

제10조(관람권 수입에 의한 사용료) ① 사용자가 관람권(초대권을 포함하며,

이 경우 초대권의 금액은 일반 관람권과 같은 금액으로 본다)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사용료 외에 관람권 수입 총액의 100분의 10(프로경기는 100분의 15)을 사용료로 징수한다. 다만, 관람수입의 총액이 제9조의 사용료보다 적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1. 14., 2017. 1. 5.>

② 제1항의 사용료는 경기종료 후 7일 이내에 정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③ 관람권을 발행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자 부담으로 관람료를 명시하여 발행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사용료를 납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⑤ 제4항 및 제9조제3항의 사용료 징수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4. 12. 31.>

⑥ 제1항에 따른 관람권 판매량의 100분의 10(문화예술행사의 경우에는 100분의 15) 이하의 초대권은 관람권 수입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6. 2. 18., 개정 2017. 1. 5.>

[제목개정 2017. 1. 5.]

제11조(사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과 별표 2에 따른 체육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적용되는 체육행사의 범위와 훈련기간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7. 1. 5., 2021. 12. 30.>

1. 전액 감면

가. 국가·도 또는 시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나. 국가·도·시의 체육회, 장애인체육회(종목·가맹단체를 포함한다)가 주최하는 행사

다. 안양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훈련

라. 국가 또는 도 단위 체육행사에 출전하는 시(체육회, 장애인체육회) 대표 선수 훈련

마. 시를 연고로 하며 시장이 구단주인 프로스포츠단의 연습·공식경기(관람권 수입에 따른 사용료 포함)

2. 100분의 50 감면

가. 국가 또는 도 단위 체육행사 대표 선발전

나. 국가·도·시의 체육회, 장애인체육회(종목·가맹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행사

다.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체육행사(다만, 판매 등 영리목적의 경우는 제외한다)

라. 시를 연고로 하나 시장이 구단주가 아닌 프로스포츠팀 및 실업팀의 연습·공식경기(관람권 수입에 따른 사용료 포함)

마. 관내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대학의 학교운동부, 시를 연고로 하는 프로스포츠팀 산하 유소년팀 및 경기도교육청에서 선정하는 공공스포츠클럽의 활동

바. 그 밖에 시장이 체육진흥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3. 100분의 30 감면

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

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체육시설 개인(단체)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7. 1. 5., 2019. 7. 1., 2020. 10. 15., 2023. 12. 29., 2024. 7. 10.>

1. 100분의 50 감면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와 그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 유공자 중 애국지사와 상이등급 1급·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과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다. 「5·18 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와 그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장해등급 1급·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라.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와 그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 유공자 중 애국지사와 상이등급 1급·2급 또

는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마.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와 그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 유공자 중 애국지사상 상이등급 1급·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와 그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 의사상자 중 부상등급이 1급 또는 2급의 경우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사.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 검사에서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

자.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사람

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카.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타. 「안양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 대상자

파.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포로와 대한민국으로 귀화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상자

거. 「안양시 저출산 대응과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 한정한다)

너. 「안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안양시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에 한함)

더. 「안양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와 그 유가족 중 1인 및 기증 희망자(국가장기조직혈액관리원 장기·조직기증희망등록증 또는 생명나눔증서 소지자에 한함)

2. 100분의 10 감면: 월 회원으로 실내수영장을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③ 시장은 공익 또는 시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기 및 행사의 경우에는 별도로 감면율을 적용한다.

- ④ 사용료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하며, 감면사유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감면율이 가장 큰 사유 하나만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6. 2. 18.]

제12조(사용료의 반환) ① 사용자로부터 징수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규정에 따라 반환한다. <개정 2020. 10. 15.>

1. 전용 또는 상업적인 사용 및 부속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그 사용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 가. 사용개시 5일 전까지: 전액
 - 나. 사용개시 1일 전까지: 100분의 90
 - 다. 개시일과 관계없이 예약 당일에 취소하는 경우: 전액
2. 그 밖에 강습을 포함한 월 정기이용 허가를 받은 사람이 그 사용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 가. 사용개시 5일 전까지: 전액
 - 나. 사용개시 1일 전까지: 100분의 90
 - 다.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일까지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0분의 10을 합하여 공제한 금액
 - 라. 개시일과 관계없이 예약 당일에 취소하는 경우: 전액
3. 제13조제1항에 따라 일시정지 된 시일만큼 연장할 수 없을 때에는 사용할 수 없는 시일에 해당하는 사용료의 전액
4. 중개방송료는 전혀 방송되지 아니한 해당 경기 및 행사에 대하여 전액
5. 태풍, 호우, 화재, 교통사고, 감염병, 황사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자연재난, 사회재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전액

② 삭제 <2020. 10. 15.>

③ 시의 사정 또는 시설물의 안전과 관련한 긴급한 보수로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반환 및 보상한다. <신설 2020. 10. 15.>

1. 사용료 전액 반환과 사용료의 100분의 10보상
2. 동일시설 예약에 한정하여 예약의 우선권 부여

④ 제1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3근무일 이내에 반환 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절차가 필요하거나 자연재난·사회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에는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20. 10. 15.>

[제목개정 2020. 10. 15.]

제13조(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15.>

1. 체육시설 이용수칙 미준수 및 그 밖에 인적·물적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3.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4. 시설 또는 설비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된 때
5. 장내 질서유지가 심히 어려울 때
6. 국가·도 또는 시의 특별한 행사가 있을시

② 삭제 <2016. 2. 18.>

③ 제1항제4호, 제6호를 제외한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정지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취소 또는 정지된 날부터 30일간 사용을 금지한다. <신설 2020. 10. 15.>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 등 처분결과를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0. 15., 개정 2023. 12. 29.>

제14조(사용자의 시설물 설치)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에 특별한 설비가 필요할 때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회 등 일시적인 행사 안내를 위한 홍보물 외의 입간판·현수막·벽보 등은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14. 11. 14., 2020. 10. 15.>

② 특별한 설비의 설치나 철거는 모두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③ 사용자는 그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5조(양도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시장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그 허가사항을 양도하거나 다시 빌려 줄 수 없다. <개정 2014. 11. 14.>

제16조(손해배상) ① 사용자의 귀책 사유에 의하여 체육시설물 및 부대시설물을 파손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회복 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4.>

② 사용자는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시설내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민사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17조(생활체육지도자의 배치) 체육시설의 사용 및 사용자에 대한 경기규칙과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생활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

제18조(대표 및 검인) ① 관람권, 연습사용권, 입장권은 각 체육시설 관리사무소에서 대표한다. 다만, 관람권 예매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4. 11. 14.>

② 사용자가 발행하는 모든 관람권, 초대권, 임원증, 선수증 등은 사전에 검인을 받아야 한다.

제19조(체육시설관리운영위원회) ①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양시체육시설관리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4. 11. 14.>

③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④ 위원은 시의 관계 실·국장과 체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9. 7. 1.>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의 경우 그 직위의 근무기간으로 한다.

제20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9. 7. 1.>

1. 체육시설관리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2. 체육시설의 이용, 편의, 설치에 관한 사항
3. 생활체육, 경기력 향상, 그 밖에 체육복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21조(위탁관리)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체육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운영을 체육단체 또는 안양도시공사에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 3. 5.>

② 시장은 시설관리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탁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위탁계약의 해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로 인한 수탁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시장은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개정 2019. 7. 1., 2020. 10. 15.>

1. 수탁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2.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경기장을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3. 그 밖에 국가 또는 도·시의 시책과 경기장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
-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제된 자는 해제된 날부터 2년간 위탁운영에 참여할 수 없다. <신설 2020. 10. 15.>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1. 14.>

부칙 <2011. 11. 2. 조례 제2363호 전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11. 14. 조례 제25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2. 18. 조례 제271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1항에 따른 별표 1, 별표 2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2조는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안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공원 내 운동시설의 사용료는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를 적용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생략

부칙 <2017. 1. 5. 조례 제27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1항에 따른 별표 1,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4. 6. 조례 제28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3. 5. 조례 제3037호, 안양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생략

제7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중 “시설관리공단”을 “안양도시공사”로 한다.

별표 2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안양도시공사 체육시설 패키지 이용사용료

- 안양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의 월 회원권 2개 이상 이용시 10% 할인한다.

④ 부터 ⑥ 까지 생략

부칙 <2019. 7. 1. 조례 제30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10. 15. 조례 제32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11. 11. 조례 제33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12. 30. 조례 제33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3. 2. 조례 제34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12. 29. 조례 제3602호>

이 조례는 202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 7. 10. 조례 제36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 12. 31. 조례 제3715호>

이 조례는 202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5. 10. 13. 조례 제38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25. 10. 13.>

체육시설 전용사용료(제9조제1항 관련)

(단위: 원)

시 설 명		사용 구분	체 육 행 사		체 육 외 행 사		비 고
			평 일	토·공휴일	평 일	토·공휴일	
종합운동장	육상장	주 간	40,000	60,000	200,000	300,000	○ 1일 기준
		야 간	60,000	90,000	300,000	400,000	
	축구장	주 간	300,000	500,000	1,000,000	1,500,000	○ 1회 2시간 사용을 원칙 으로 하며, 1시간 추가 시 50%가산 (단, 1일 최대 이용시간 은 3시간)
		야 간	700,000	1,000,000	1,400,000	1,800,000	
	보 조 경기장	주 간	무 료	무 료	무 료	무 료	○ 1시간당 ○ 1일 1회 2시간 기준
		야 간	8,000	10,000	15,000	20,000	
수영장		09:00 ~ 18:00	400,000	520,000	800,000	1,040,000	○ 초과사용료는 시간당 주간 10%, 야간 20% 가산 (초과사용은 2시간 이 내)
		09:00 ~ 12:00	140,000	182,000	280,000	364,000	
		12:00 ~ 18:00	300,000	390,000	600,000	780,000	
안양체육관	주 경기장	주 간	80,000	100,000	350,000	400,000	○ 1일 1회 2시간 기준
		야 간	100,000	130,000	400,000	500,000	
	보 조 경기장	주 간	30,000	50,000	100,000	150,000	
		야 간	50,000	70,000	120,000	170,000	
빙상장		06:00 ~ 10:00	70,000	70,000	400,000	400,000	○ 1시간 기준 ○ 10:00~20:00 빙상장 사정에 따라 사용 허가를 결정
		10:00 ~ 20:00	100,000	150,000	400,000	400,000	
		20:00 ~ 24:00	70,000	70,000	400,000	400,000	
인라인 롤러경기장 (스피드트랙)		주 간	70,000	90,000			○ 1일 1회 3시간 기준
		야 간	105,000	135,000			

시 설 명	사용 구분	체 육 행 사		체 육 외 행 사		비 고
		평 일	토·공휴일	평 일	토·공휴일	
인조잔디 축 구 장	주 간	40,000	50,000	100,000	150,000	○ 1회 2시간 기준 ○ 전기조명사용료 별도
	야 간	50,000	60,000	150,000	200,000	
야 구 장	주 간	60,000	70,000			○ 1회 대관 2시간 기준 ○ 전기조명사용료 별도
	야 간	70,000	100,000			
야외풋살장	주 간	30,000	40,000			○ 1회 대관 2시간 기준
	야 간	40,000	50,000			
족 구 장	주 간	5,000	7,500			○ 1회 대관 2시간 기준
	야 간	15,000	20,000			
파크골프장	주 간	200,000	250,000			○ 1일 기준
배드민턴장 · 탁구장	주 간	55,000	80,000	75,000	110,000	○ 1회 3시간 기준 ○ 타 종목 시설이용 시 준용 ○ 사용시간 초과 시 가산 - 30분~1시간: 20% 가산 - 1시간~2시간: 50% 가산 - 2시간~3시간: 100% 가산
	야 간	65,000	85,000	90,000	120,000	
스쿼시장	주 간	20,000	30,000	40,000	60,000	○ 1면 1시간
	야 간	30,000	45,000	60,000	90,000	
인공암벽장	주 간	30,000	40,000			○ 1회 대관 2시간 기준
실내풋살장	주 간	30,000	50,000	100,000	150,000	○ 1일 1회 2시간 기준
	야 간	50,000	70,000	120,000	170,000	
다목적체육관	주 간	30,000	50,000	100,000	150,000	○ 1일 1회 2시간 기준
	야 간	50,000	70,000	120,000	170,000	

【전용사용료 공통사항】

- 전용사용료는 유료시설에 한하여 적용한다.
- 복합청사, 석수체육관은 사용료의 10% 부가가치세를 별도 징수한다.
- 시설별 사용자 중 관외거주자가 2분의 1이상인 경우 사용료의 30%를 가산한다.
(인조잔디축구장, 야구장 제외)
- ※ 안양시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자 또는 직장(학교)에 재직(재학) 중인 자는 관내거주자 사용료를 적용한다.

[별표 2] <개정 2024. 12. 31.>

체육시설 개인·단체 사용료(제9조제1항 관련)

가. 테니스장

(단위: 원)

구 분		사 용 료		비 고
일일 입장	평 일	주 간	3,500	○ 1면 1시간당 ○ 단체는 30명 이상, 30% 할인 ○ 어린이는 50% 할인 ○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간주
		야 간	6,500	
	토 공휴일	주 간	5,000	
		야 간	9,500	
강습	주2회	성인	60,000	○ 1시간/회 (월 단위) ○ 관외거주자 30% 가산
		청소년·어린이	40,000	

나. 수영장

(단위: 원)

구 분			기 준	사 용 료	비 고
개 인	일일 입장	성 인	1명 1회	3,500	○ 1일 1회 1시간 기준 ○ 물품보관료 월 6,000원 별도 ○ 단체는 30명 이상, 30% 할인 ○ 회원은 1개월 기준 ○ 회원 관외거주자 30% 가산 ○ 부가가치세는 사용료에 포함한다.
		군·청소년	"	3,000	
		어린이	"	2,500	
회 원	자유 정기 이용 (월20일)	성 인	월회원	60,000	
		군·인	"	50,000	
		청소년	"	45,000	
	수영 강습 (주3회)	성 인	월회원	50,000	
		군·인	"	45,000	
		청소년	"	40,000	
	수영 강습 (주2회)	성 인	월회원	40,000	
		군·인	"	36,000	
		청소년	"	32,000	
	아쿠아 로빅 (주3회)	성인	월회원	60,000	
	아쿠아 로빅 (주2회)	성인	"	50,000	
1레인 1시간				10,000	○ 유치원, 각급 학교 및 일반인 단체에 한함. ○ 토·공휴일 제외 ○ 복합청사는 사용료의 10% 부가가치세 별도 징수

다. 빙상장

(단위: 원)

구 분		성 인	군인·청소년	어린이	비 고	
일일입장		3,500	3,000	2,500	○ 단체는 30명 이상, 10% 할인 ○ 물품보관료 월 6,000원 별도 ○ 1일 1회 2시간 기준	
월 회	1회 강습료 (월정운영)	8,000	7,000	6,000	강습 포함	○ 주말강습 20% 할증 ○ 평일강습 10회 초과 프로그램 20% 할인 ○ 관외거주자 30% 가산
원	정 기 이 용 권	70,000	60,000	50,000	강습 제외	○ 관외거주자 30% 가산
신발대여료		3,000	3,000	3,000	○ 3시간 기준 ○ 단체는 30명 이상, 10% 할인	
연 마 료	1회 이 용 권	○ 스피드: 2,500 ○ 피겨·하키·신품: 3,500				
	월 정 이 용 권	○ 주3회 강습 및 일반보급용: 20,000 ○ 주5회 강습 및 피겨·하키·선수용: 30,000				보관료 포 함

라. 인라인롤러경기장

(단위: 원)

구 분		성 인	청소년	어린이	비 고	
일일입장 (스피드트랙)	주 간	1,500	1,000	1,000	○ 1일 1회에 한함 ○ 단체는 30명 이상, 20% 할인	
	야 간	3,000	2,000	1,000		
월 회 원	주5회 강습	50,000	45,000	40,000	월정기이용권 포함	관외거주자 30% 가산
	주3회 강습	40,000	35,000	30,000	월정기이용권 포함	
	주2회 강습	30,000	25,000	20,000	월정기이용권 포함	
	정기이용권	20,000	10,000	5,000	○ 강습 제외 ○ 1개월(30일)기준	

마. 호계체육관 볼링장, 배드민턴장, 탁구장

(단위: 원)

구 분	시설명	사용기준		사용료		비 고
				평일	토·공휴일	
일 일 입 장	볼링장	성 인	인당	2,600	2,800	○ 1명 1게임 기준 ○ 1일 최대 6게임 이용 (이용 대기자가 많을 경우 4게임으로 조정 가능)
		초·중·고생	인당	2,000	2,200	
		신발 대여료	인당	1,000		
	배드민턴장	이용자	면당	6,000	8,000	○ 1일 1시간 30분 기준 ○ 1면당 최대 6명 ○ 입장자 중 감면대상자가 과반 이상 시 동일 감면을 적용
	탁구장	이용자	면당	3,000	4,000	○ 1일 1시간 30분 기준 ○ 1면당 최대 4명 ○ 입장자 중 감면대상자가 과반 이상 시 동일 감면을 적용
강 습	배드민턴장	주3회	인당	72,000		○ 1회 1시간 30분 기준 ○ 강습료: 월정액 ○ 관외 거주자 30% 가산
		주2회	인당	48,000		
	탁구장	주3회	인당	54,000		
		주2회	인당	36,000		

바. 배드민턴장

(단위: 원)

시설명	구 분	사용료		비 고
		평일	토·공휴일	
배드민턴장	이용자	1,000	1,500	○ 1일 1시간 30분 기준 ○ 1명 기준 ○ 강습료 : 월정액 ○ 호계배드민턴장 등 유료시설에 적용 ○ 강습 관외거주자 30% 가산 ○ 복합청사는 사용료의 10% 부가가치세 별도 징수
	주5회 강습	90,000		
	주3회 강습	60,000		
	주2회 강습	40,000		

사. 야구장, 풋살장, 농구장

(단위: 원)

시설명	구 분		사용료	비 고
야구장	성인	주1회 강습	50,000	○ 월4회 기준 ○ 2시간/회(토, 공휴일 제외) ○ 관외거주자 30% 가산 ○ 1시간/회 ○ 관외거주자 30% 가산 ○ 복합청사는 사용료의 10% 부가가치세 별도 징수
풋살장	성인	주1회 강습	32,000	
	청소년·어린이	주1회 강습	27,000	
농구장	성인	주1회 강습	25,000	
	청소년·어린이	주1회 강습	20,000	

아. 스쿼시장

(단위: 원)

구 분		기 준	사 용 료	비 고
일일입장		성 인	1회 1시간	○ 일일입장은 기준시간을 선택하여 이용 가능하며, 대기자가 있을 시 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 ○ 월자유이용은 1개월 이용(1일 1회 2시간) 기준이며, 토·일은 제외함. ○ 물품보관료 월 6,000원 별도 ○ 회원 관외거주자 30% 가산 ○ 복합청사는 사용료의 10% 부가가치세 별도 징수
			1회 2시간	
		청소년	1회 1시간	
			1회 2시간	
		어린이	1회 1시간	
			1회 2시간	
회원	주3회 강습	성 인	1회 1시간	○ 월자유이용은 1개월 이용(1일 1회 2시간) 기준이며, 토·일은 제외함. ○ 물품보관료 월 6,000원 별도 ○ 회원 관외거주자 30% 가산 ○ 복합청사는 사용료의 10% 부가가치세 별도 징수
		청소년	"	
		어린이	"	
	주2회 강습	성 인	"	
		청소년	"	
		어린이	"	
	월자유이용	성 인	1일 1회 2시간	
		청소년	"	
		어린이	"	

자. 인공암벽장

(단위: 원)

구 분		성인	청소년	어린이	비 고
일 일 입 장	평 일	2,000	1,500	1,000	○ 강습은 5명 이상 (회당 1시간 30분)
	토 · 공휴일	3,000	2,000	1,500	
월 사용료		30,000	25,000	20,000	○ 1일 최대 이용시간은 3시간
강 습 료		8회 50,000원			

차. 파크골프장

(단위: 원)

구 분	사용료	장비 대여료	비 고
평 일	2,000	1,000	○ 1회(4시간) 이용 기준 ○ 관외거주자 50% 가산
토 · 공휴일	3,000		

카. 다목적운동장(중앙공원, 학운공원)

(단위: 원)

구 분	사용료	비 고
평 일	무료	○ 조명사용료 별도 징수 ○ 조명사용료는 [별표 5] 부속시설 사용료 준용 ○ 사용시간은 1일 2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1시간 미만일 경우 1시간으로 한다.
토 · 공휴일		

【개인(단체) 사용료 공통사항】

- 안양시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사람 또는 직장(학교)에 재직(재학) 중인 사람은 관내 거주자 사용료를 적용한다.
- 안양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의 월 회원권 2개 이상 이용시 10% 할인한다.

[별표 3] <개정 2019. 7. 1.>

중 계 방 송 료(제9조제1항 관련)

(단위: 원)

경기장별	구 분	텔 레 비 전		라 디 오	
		국 내	국 제	국 내	국 제
주경기장 수영장 체육관 (호계체육관 포함) 빙상장	체육경기	50,000	80,000	20,000	40,000
	체육외행사	120,000	230,000	60,000	120,000

[별표 4] <개정 2019. 7. 1.>

상 업 사 용 료(제9조제1항 관련)

(단위: 원)

구 분	기 준	요 금	비 고
영화촬영(CF포함)	주 간	100,000	
	야 간	150,000	
애드벌룬 등의 게양에 의한 광고	1일 1개	5,000	
선 전 물 (A보드, 현수막등)	1 년 간	500,000	1개당(10㎡ 이내)
	5일 이내	50,000	
	1일 초과	10,000	
프로그램 선전책자 판 매	판매부수 × 1부당 가격	판매액의 20%	
기타 물품대여 (판매대여)	(매출금액-원가) × 판매수당	실판매이익의 20%	
단기성 행사광고용	상호계약에 의거 적의 조정 가능		

[별표 5] <개정 2024. 12. 31.>

부속시설 사용료(제9조제1항 관련)

(단위: 원)

구 분	기 준	사 용 료		비 고
전 기	1 Kw	(시설용량Kw×Kw당기본료÷30일)+ (시설용량Kw×사용시간×Kw당단가)		한국전력 전력사용 공급기준 적용
조 명	축 구 장	100,000		전기요금 별도징수
	육 상 장	100,000		
	다목적운동장	1시간	16,130	
		2시간	26,440	
		3시간	36,740	
무대조명	체육관 및 빙상장 이벤트 행사용	100,000		
음향설비	1일 1회	100,000		
영상 LED전광판	1일 1회 1대당(4시간)	종합운동장 150,000 그 외 시설 50,000		
스코어판	1일 1회 1대당(4시간)	20,000		
냉 · 난방	1시간	기본료(50,000원) + 실제사용한 가스사용료		
식 당 매 점 사무실		일반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		

(추 1)